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윤준병 · 임미애
전용기 · 이상식 · 황명선
이수진 · 강준현 · 한정애
문대림 · 서미화 · 오세희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·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.

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,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.

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·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

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.

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, 시설 설치·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.

주요내용

가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4 신설).

나. 용수로·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, 배수, 홍수·재해 예방,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함.

다.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농업용수 공급·배수 기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.

라.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·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

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·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
마.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4(농업생산기반시설 상부 유희공간의 활용) ① 농업생산기반

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상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용수로, 배수로 등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

1.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배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
2. 홍수, 집중호우,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지장을 주는 경우
3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또는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

4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점검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 또는 안전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상부 또는 유희 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,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, 재해 예방, 유지·관리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을 허가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허가의 절차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시설의 안전기준,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
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·운영 중인 시설은 이 법에 따른 시설의
설치·운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설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4(농업생산기반시설 상부 유휴공간의 활용)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상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용수로, 배수로 등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배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</u> <u>1.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배수</u>

에 지장을 주는 경우

2. 홍수, 집중호우, 가뭄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지장을 주는 경우

3.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또는 기능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

4.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점검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 또는 안전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상부 또는 유희공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,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, 재해 예방, 유지·관리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을 허가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허가의 절차, 사용료의 부과·징수, 시설의 안전기준, 원상회복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또는 그 밖의 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